

천마의 집의 住所를 變更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監 所屬下에 11人 이내의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教育財政計劃 樹立, 財政運營方向, 財源調達, 投資事業計劃 樹立 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바, 地方自治法 第15條 및 地方財政法 第16條의2에 근거하여 本委員會를 設置하여 教育財政計劃 樹立, 財政運營方向, 財源調達, 投資事業計劃 樹立 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當 委員會에서 執行部の 說明을 듣고 그리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마친 후 우리 委員들이 深深한 討議를 거쳐서 滿場一致로 可決했습니다.

아무쪼록 深思熟考하셔서 原案대로 可決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關한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關한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표중 대성의 집 위치란을 다

음과 같이 하며, 천마의 집 위치란의 “남양주군 미금시”를 “남양주시”로 한다.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의 6호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시행세칙) 각 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장
2.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

<p>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p>제 5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p> <p>제 6 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 7 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p> <p>제 8 조(관계기관등과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 9 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10 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11 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다.</p> <p>제 12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9.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0.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 style="text-align: right;">(15時 49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棒 3打)</p> <p>文化教育委員會 朴善童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朴善童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文化教育委員會 所屬 朴善童議員입니다.</p> <p>1995年 3月 25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3月 28日 當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5年 3月 30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3月 31日 當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에 대한 當 委員會 審査結果를 上程順序대로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p> <p>먼저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를 서울特別市世界化推進協議會로 名稱을 變更하고, 協議會 委員을 15人 이내에서 20人 이내로 調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當 委員會에서 審査한바,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2條와 서울國濟化推進協議會構成및運營計劃市長方針 第129號(95.2.14)에 따라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를 서울特別市世界化推進協議會로 名稱을 變更하고, 協議會 委員을 民·官</p>
--	--